

# 율과 청규의 관계에 대한 고찰

허훈(신공)  
동국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 승가는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수행풍토를 갖추는 문제가 시급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생활은 인간의 삶의 질이 다양화되고 다변화 양상을 보이면서 생활의 패턴도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오랜 역사와 전통의 수행가풍을 유지해 온 한국불교 조계종단은 이 시대에 새로운 승가규범인 '조계종 선원청규'를 세워 종단의 승풍을 진작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종단에서 추진 중인 청규의 제정에 모든 종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한국불교의 전통종단인 조계종단은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온 계율과 선불교의 모습 속에 자리 잡은 청규, 그리고 현실적 종단운영을 위해

제정된 종헌 종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인도문화권에서 제정된 율과 중국문화권에서 성립된 청규의 관계에서 시대성과 문화성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초점이 맞추어진다. 현재 조계종의 승려가 되기 위한 입문과정과 수계절차는 『사분율』을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수행도량에서는 별도로 정해진 규거인 청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sup>1)</sup>

또한 종단의 사찰운영 및 내규에 관한 것은 종헌 종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율과 청규 그리고 종헌 종법이라는 삼중구조 속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설정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은 율<sup>2)</sup>과 청규<sup>3)</sup>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sup>4)</sup> 율은 출가교단인 승가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범이다. 반면 청규는 중국문화의 바탕위에 자리 잡은 선종이 독립된 교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선원의 일상생활과 수행생활에 적합하도록 제정된 선문의 규범

- 
- 1) 조계종의 기본적 수행도량은 선원, 강원(승가대학), 율원, 염불원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곳에서의 입문절차와 생활규거 및 수행방법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로 정해진 청규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 2) 본 논고에서 언급하는 율의 범위는 여러 부파의 율장이 있지만 『四分律』에 한정해서 다루기로 한다.
  - 3) 일반적으로 청규는 『백장청규』를 의미하지만 원형이 산실되어 알 수 없는 관계로 별도의 청규문헌을 언급하지 않는 한 『백장청규』의 근본정신을 담고 있는 자각종색의 『선원청규』를 말한다.
  - 4) 율과 청규의 관계에 대한 논문은 학계에서 여러 편 발표되었다. 대표적 논문으로는 강문선, 「계율과 청규의 관계에서 본 현대 한국의 선원청규」 『한국불교학』 제46집, (한국불교학회 2006), 221-247쪽; 宗眞, 「율장과 청규」 『禪院淸規 편찬을 위한 학술세미나』, (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2007), 57-68쪽.

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율과 청규의 정신 속에 담겨 있는 성격과 의의를 바탕으로 청규와 율의 관계를 계승적으로 보는 견해<sup>5)</sup>와 서로 다른 측면에서 보는 독립적 견해<sup>6)</sup>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율과 청규의 상호관계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며, 현실적 입장에서 청규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율과 청규에 나타난 성격과 의의

### 1. 율의 성격과 의의

부처님 재세시 승단의 규범과 원만한 수행을 위해 제정된 것이 계율이다. 계율은 본래 두 어의가 혼용된 의미로 계(戒)는 범어 Sila로 습관(習慣), 성향(性向), 도덕(道德)을 뜻하며, ‘좋은 습관성’ ‘좋은 행위’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선한 행위를 하려고 결심하고 또 그러한 결심을 계속해서 실행에 옮기면 좋은 습관이 몸에 배게 되는 것을 뜻한다.<sup>7)</sup> 이는 세간의 도덕이나 윤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의 의지와 결의에 관

---

5) 청규와 율의 관계에서 최법혜는 「선종청규에 대한 총설」 『승가교육』 제5집,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4), 154쪽에서 “청규의 기본은 율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했으며, 해인사 율원 율주이신 종진스님의 견해는 “율과 청규는 일치하지 않지만, 계율과 청규의 관계를 계승적 관계로 보았다.” 宗眞, 上揭書, 67쪽.

6) 향해, 「청규는 제2의 율장인가」 『불교평론』 32 (불교시대사: 2007 가을), 187-207쪽에서 율과 청규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는 견해를 제시했는데 청규는 일행 의식적 입장에서 이를 고찰하였다.

7) 최법혜, 上揭書, 158쪽.

계된 용어로 자발적으로 악을 멀리하겠다는 결심이다.

율(律)은 범어 Vinaya로 음역은 비나야(毘那耶)·비니(毘尼)이며, 의역은 제거(除去)·훈련(訓練)·제지(制止)·조복(調伏)·선법(善法) 등으로 악업을 조복하여 선법을 증장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이 뜻은 심신을 잘 다스려 번뇌나 악행을 제거하고 나쁜 습관을 버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뜻을 지닌다. 이러한 율의 의미는 점차 발전되어 출가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승가공동체의 규칙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일반적 개념으로 계에 담긴 광의적 의미는 세간의 도덕이나 윤리에 해당되는 용어로 자발적인 불교의 도덕적 입장이며, 율은 출가 수행자들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수행규범이다. 불교에서 계와 율은 단순히 교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 아니라 깨달음을 완성하는 원동력이며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신적 평안의 원천이 된다.<sup>8)</sup>

계와 율의 차이점은 율은 계와 달리 승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적이며 객관적인 규범으로 어겼을 경우 벌칙이 동반된다.<sup>9)</sup> 이런 점에서 율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율의 제정은 불교교단이 점차 대규모화되는 과정 속에서 대중생활의 원활한 운영과 수행생활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교단이 점차 대규모화되어감에 따라 율은 체계적인 승단의 규범으로 제정되어져 승단생활의 통제와 단속을 통해 승가생활과 수행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것은 당시 교단 내에서 승가의 잘못된 행위가 적발될 시 그

---

8) 『佛垂般涅槃略說教誡經』(『大正藏』12, 120c), “…… 戒爲第一安穩功德之所住處”

9) 이자랑, 「율장을 통해 본 승단과 현대사회의 조화」, 『한국불교학』 45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2006), 165쪽.

죄의 경중에 따라<sup>10)</sup> 새로운 규범이 세워졌다. 따라서 율을 제정한 목적을 正法久住하기 위함이었다.<sup>11)</sup>

이와 같이 율은 승단의 화합과 원만한 운영을 통한 승단발전에 있다. 출가수행자가 교단생활에 있어 지켜야 할 금율(禁律)과 행지(行持)를 기술한 것이 율장으로 구성 체계는 경분별(經分別)과 건도부(健度部) 그리고 부수(附隨)로 이루어져 있다. 경분별은 승단생활에 있어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기술하고 있으며, 건도부<sup>12)</sup>는 의식·작법·승가생활을 비롯한 예의 등에 관한 모든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부수는 경분별의 해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율장의 규정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다. 첫째는 승단의 구성원이 되어 개인적으로 수행 생활 중에 지켜야 할 금지적 성격의 지지계(止持戒)로서 殺·盜·淫·婬과 같은 身口意 三業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이다. 이는 止惡門으로 잘못된 것을 방지하고 악한 행위를 그치게 하는 도덕적 규정이다. 둘째는 대중이 단체로 실행하는 규범으로 보름마다 하는 포살 의식이나 안거·自恣儀式 등은 작지계(作持戒)의 성격을 갖는다. 이것

10) 승가교단은 벌칙에 있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합하여 모두 8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오편(五篇) 칠취(七聚)로 나누어 다스린다.

11) 『四分律』 권1(『大正藏』22, 567b), “稽首禮諸佛 及法比丘僧 今演毘尼法 令正法久住”

12) 『사분율』에 나타난 健度部는 20 건도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受戒健度(계를 받는 법) (2) 設戒健度(계를 설하는 법) (3) 安居健度(안거하는 법) (4) 自恣健度(자자하는 법) (5) 皮革健度(가죽에 관한 법) (6) 衣健度(옷에 관한 법) (7) 藥健度(약에 관한 법) (8) 迦絺那衣健度(카치나 옷에 관한 법) (9) 拘睭彌健度(코삼비 지방에서 생긴 일) (10) 瞻波健度(침파 지방에서 생긴 일) (11) 呵責健度(나쁜 비구를 꾸짖는 일) (12) 人健度(죄를 숨기지 않는 사람을 다스리는 법) (13) 覆藏健度(죄를 숨기는 사람을 다스리는 법) (14) 遮健度(설계를 막는 법) (15) 破僧健度(화합을 파기한 비구에 대한 법) (16) 滅淨健度(다툼을 없애는 법) (17) 比丘尼健度(비구니의 특수한 법) (18) 法健度(비구의 위위에 관한 법) (19) 房舍健度(집과 방에 관한 법) (20) 雜健度(여러 가지 법)

은 사원의 단체생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식 행사인 수계·안거·포살 등이 행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총칭해서 作善門이라 한다.

특히 율은 승단의 안정과 화합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단의 규칙이란 점에서 교단사(敎團史) 측면에서 율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sup>13)</sup> 율은 수행자 개인에게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수행방편이 되었으며, 교단 내적으로는 승가의 청정성과 화합된 교단을 유지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율은 사회적으로는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부처님의 법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율 제정의 성격과 의의가 바로 승단의 안정과 교단의 발전에 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 2. 청규의 성격과 의의

청규는 중국의 선불교의 토대 위에 경제적·문화적·생활적 측면을 고려하여 선가의 풍토와 기후 그리고 생활관습에 따라 제정된 규범이다.<sup>14)</sup> 그래서 청규에 담긴 어의는 선문의 청정한 대중이 일상생활과 수행생활 속에서 준수해야 할 법도를 가리킨다. 청규의 시원은 당대(唐代)의 백장이 제정한 백장청규라 할 수 있는데, 현재 백장청규 문헌 자체는 산실되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양역(楊億)의 「古清規」에서는 청규가 성립되는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

13) 이자량, 上揭書, 156쪽.

14) 허훈(신공), 「청규에서의 생활문화연구」(서울: 동대박사학위, 2007), 1쪽.

“百丈大智禪師로부터 禪宗은 시작되었다. 少室로부터 曹溪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律寺에 기거했으며, 비록 院은 달리했으나 住持의 설법하는 規度가 맞지 않았다.”<sup>15)</sup>

백장 당시의 선종사원은 율원과 함께 병합되어 있어 독립된 사원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이 점은 선원과 율원의 수행법도가 다르면서 같은 공간에 생활하다 보니 규범과 의식이 맞지 않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되었다. 백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면서 선원을 율원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청규를 제정했던 것이다. 특히 백장이 청규를 제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기존의 율의 정신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현실적 상황에 맞는 선원의 수행체계와 법도를 세우는 일이었다. 이점은 『祖庭事苑』 8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데서 알 수 있다.

“달미는 양나라로부터 위(魏)나라에 은거(隱居)하여 혜능에게까지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대적(大寂)에 이르러서는 250년 후에야 선원에 머물렀으니 홍주백장대지선사회해가 또한 뜻을 내어 대·소승에 국한되지도 않고 대·소승과도 다르지도 않으며 마땅히 博約折中하여 제범(制範)을 시설하였다.”<sup>16)</sup>

15) 『勅修百丈清規』 권8(『大正藏』48, 1157c), “百丈大智禪師以禪宗肇自少室至曹溪以來多居律寺 雖別院然於 說法住持 未合規度”

16) 『祖庭事苑』 권8(『卍續藏經』113, 117c), “自達磨來梁隱居魏地 六祖相繼至於大寂之世 凡二百五十餘年未有 禪居洪州百丈大智禪師懷海方勅意 不拘大小乘折中於經律法以設制範”

중국선종사에서 선문 형성의 시원(始原)은 동산법문으로부터 보고 있다. 달마로부터 승찬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아직 대규모의 수행집단이 형성되지 못하고 두타 수행을 중심으로 행했던 시기였다. 도신(道信: 580~651)과 홍인(弘忍: 601~674)의 동산법문은 선종교단 형성의 효시가 되었다. 도신은 기주(蘄州)에 위치한 쌍봉산(湖北省 黃梅縣)과 홍인은 東山인 빙무산(憑茂山)에서 선법을 펼치면서 수선도량을 열어 500여 명의 대규모 수행집단이 이루어졌다. 이후 마조도일(道一: 709~788) 문하에는 800여 명의 수행자들이 모여 선종교단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sup>17)</sup>

이러한 대규모 수행집단이 형성됨으로써 선문의 현실에 맞는 규범과 수행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규정이 요구되었다. 중국불교에 있어 인도에서 성립된 대·소승의 계율은 중국의 풍토·환경·관습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해 여러 면에서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백장은 대·소승의 계율에 국한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면서 폭넓게 계율을 박약절중(搏約折中)하여 새로운 규범을 만들었다.<sup>18)</sup> 이는 청규의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으로 백장이 뜻을 내어 선문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를 창안하니 기존의 대·소승의 계율에 국한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는 새로운 제도가 청규라는 것이다.

백장은 청규를 제정함에 기존의 전승되어 온 율의 정신을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현실에 맞는 부분은 율장의 형태를 현실적 토대위에 청규에 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율이라 할지라도 중

17) 정성본, 『禪의 역사와 禪思想』, (서울: 삼원사, 1994), 335쪽.

18) 「禪門規式」 『景德傳燈錄』 권6(『大正藏』48, 18a), “師曰吾所宗 非局大小乘 非異大小乘 當搏約折中 設於制範 務其宜也 於是創意 別立禪居”



국선문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隨方毘尼’에 의해 개정하였다. 이는 백장이 청규를 제정하면서 대·소승 율에 담겨 있는 정신을 참조했지만,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선원에 적합한 독립적 규칙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청규의 성격이 대·소승의 계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百丈清規證義記』에서 『四分律』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四分律』에서 말하길,<sup>19)</sup> “부처님께서 제정한 것은 마땅히 버리지 말고, 부처님이 제정한 바가 아닌 것은 마땅히 제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청규의 뜻이며, 백장선사가 청규를 거듭 集錄한 뜻이다.<sup>20)</sup>

이와 같이 백장이 청규를 제정함에 있어 율의 정신을 배제하고 청규를 만든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교단의 화합과 올바른 승가생활을 위해 율을 제정하셨던 의도와 백장이 청규를 제정함에 있어 당시 현실적 상황에서 선문에 맞는 법도와 절차를 갖추어 독립교단을 세우고자 한 뜻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규의 성격이 대·소승의 계율에 국한되지도 않았다고 한 것은 중국의 문화와 풍토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율장조문에는 얽매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율장의 ‘九十波逸提’ 중 第十 掘地戒의 조문에는 “만약 비구가 손수 땅을 파거나 사람을 시켜서 파게 하면 波逸提이다.”<sup>21)</sup>라

19) 『四分律』권54(『大正藏』22, 9671b), “若佛先所不制 今不應制 佛先所制 今不應却 應隨佛所制而學 時即共 立如此制限”

20) 『百丈清規證義記』卷首(『卍續藏經』111, 591a), “四分律云 是佛所制者不應却 非佛所制者不應却 凡此皆清 規之義 百丈重集之義”

21) 『四分律』권12(『大正藏』22, 641b), “若比丘自手掘地若教人掘者波逸提”

고 했다. 이 조항은 땅을 파게 되면 땅속의 생물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규제했던 것이다.

백장은 이 掘地戒의 조문을 파게하면서까지 중국선문의 현실에 맞는 청구제도를 규정한 것이 ‘보청법’이다. 普請은 ‘두루 청한다’는 의미로서 선원에 큰 작업이 있거나 당직비구의 힘으로 안 될 때 대덕이 대중에게 助力을 청하여 대중이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보청법의 정신은 모든 대중이 함께 運力 行爲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청법을 실행하는 것은 상하가 힘을 합치는 것이다.”<sup>22)</sup>라고 하였다. 상은 주지로 부터 下는 行者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사원의 작업이나 생산노동에 참여하는 규정이다. 이 보청법이 행해짐으로써 선원의 경제적 자립기반이 갖추어짐으로써 교단의 독립을 이루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점은 인도에서 제정된 계율의 조목이 실제 중국인들의 생활습관이나 풍토에 맞지 않는 점이 많았으며, 이런 점 때문에 백장은 선문에 있어 현실적으로 승단생활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인 청구를 제정했던 것이다.<sup>23)</sup>

중국선종사에 있어 청구의 정신에 담긴 의의를 보면, 첫째는 사상적 측면에서 선종의 수행방법에 일대전환을 가져왔다. 선종의 유일한 수행법은 좌선수행이었지만 청구의 도입으로 노동의 형태인 보청법도 수행의 한 모습으로 인식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선원에서의 공양과 운력 그리고 차를 마시는 飲茶의 일상생활 전반이 수행의 모습으로 전개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

22) 「禪門規式」『景德傳燈錄』권6(『大正藏』51, 251a), “行普請法 上下均力也”

23) 정성본, 『중국선종의 성립사연구』(서울: 민족사, 1993), 787쪽.

둘째는 역사적 측면에서 계율사에 있어 획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이나 한국불교는 사상적으로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 수계의 절차나 방법은 소승계인 『사분율』에 의거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이 문제가 율과 청규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백장은 당시 선종교단의 자체 규범인 청규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실생활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혁하여 중국선문의 현실에 맞는 계율인 청규를 제정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백장은 청규를 제정함에 있어 대·소승의 계율을 참조했지만 그 어느 쪽에도 얽매이지 않고 선원에 적합한 독자의 규칙을 제정했다.

셋째 당시 사회적 측면에서 청규의 보충법은 사원경제의 독립성을 이루어 자급자족의 경제생활을 함으로써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지관은 “청규는 선종을 창출 계승한 동북아시아 불교권에 流轉된 독특한 불교규범이다.”<sup>24)</sup>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백장이 중국불교의 독자의 계율을 선원에 적합하도록 제정했던 부분은 선종이 자체의 행지(行持)와 규범(規範)을 가짐으로써 선종이 독립된 교단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sup>25)</sup>

뿐만 아니라 청규에 담겨있는 정신에는 선종생활에 있어 일상의 행주좌와에 걸쳐 의식주에 있어서는 검박함이 담겨 있고 대중을 봉사함에 있어서도 진력을 다했으며 소유함이 없어도 사물을 아껴 낭비함이 없게 하였다. 특히 佛緣에 예배함보다 법문을 청하고 수행을 점검함이 중요하다 하여 설법당인 주전을 소중하게 여기며, 간경 또한 게을리하

24) 伽山智冠 著, 『한국불교계율전통』(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5), 121쪽.

25) 鏡島元隆, 「百丈清規の成立とその意義」『禪研究所紀要』(京都:愛知學院禪研究所, 1976), 123쪽.

지 않았다. 다례와 제의를 수행함에 사치와 俗事가 되지 않게 하며 외부와 소통함에 있어 출입과 서신접수의 규범을 간소하게 하여 세간과 번잡하게 섞이지 않게 하였다.<sup>26)</sup> 이처럼 청규는 중국선문의 현실에 적합하면서 선원의 일상생활과 수행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지 규제와 통제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III. 율과 청규와의 관계

#### 1. 율과 청규의 계승적 관계

위에서 살펴본 율과 청규의 성격과 의의를 통해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초기불교 교단사 측면에서 보는 관점과 중국선종사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있다. 율의 제정을 통해 유지 발전되는 승가교단과 청규의 제정으로 선원의 독립된 수행생활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볼 때 상호 관계성을 갖고 있다. 주지하듯이, 율의 제정은 승단의 화합과 수행을 바탕으로 正法久住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청규도 선종교단인 총림선원에서 수행하는 선자들의 일상생활의 전반에 걸쳐 수행의 효율적 측면에서 제정되었다.

율은 인도문화와 불교사상의 바탕 위에 만들어진 교단의 규범적 성격과 함께 교단을 유지 발전시킨 측면을 갖는다면, 청규역시 중국문화를 바탕으로 선사상과 수행을 통해 선종을 독립된 교단으로 발전시킨

---

26) 伽山智冠 著, 『한국불교계율전통』(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5), 124쪽.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초기교단사의 입장에서 보면 율이 청구의 내용과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선종교단의 측면에서 보면 청구는 부처님 당시 제정된 율을 현실적 입장에서 수용하면서 새롭게 독립적으로 제정된 승가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율과 청구는 상호 관계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古淸規序」에서 백장은 청구를 제정하게 된 동기를 당시 “선원은 율원과 병합되어 거주했는데 비록 禪院을 별도로 두었다고는 하지만 설법이나 주지하는 절차와 방법이 법도에 맞지 않아 청구를 제정했다.”<sup>27)</sup>고 했다. 당시 선문의 현실적 입장에서 보면 수행규범이나 생활의 모습들이 선원의 선자들에게는 법도와 의식절차가 맞지 않았다.

또한 중국불교의 전래된 소승의 『사분율』과 대승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범망경』만으로는 선문의 토대를 세울 수 없어 기존의 율장을 수용하면서 중국문화에 적합한 새로운 청구를 만들었다. 특히 백장은 대·소승의 율을 수용하면서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제도를 확립했다. 그렇지만 백장은 선문이라 할지라도 두 형태의 율은 있을 수 없지만, 선문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규범을 세운다고 밝혔다.

대저 선문의 사례에는 비록 두 가지 비니가 있을 수 없지만, 납자의 가풍에는 별도의 일반규범이 있을 수 있다.<sup>28)</sup>

27) 「古淸規序」『勅修百丈淸規』권8 (『大正藏』48, 1157c), “茶居律寺 雖別院然於說法住持未合規度 故常 爾介懷”

28) 『禪苑淸規』(『卍續藏經』111권, 875a), “夫禪門事例 雖無兩樣毘尼 衲子家風 別是一般規範”

백장은 선문에 해당되는 근거를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율을 바탕으로 수행의 근본정신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천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총림의 특성상 별도의 생활규범과 수행 가풍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黃奎는 선종청규와 계율의 관계를 “선종청규는 근본적으로 계율의 기본원칙과 정신을 위배하지 않았고, 다만 몇몇 구체적 계조(戒條)인 掘地戒 등에 대해서는 벗어난 부분은 있다.”<sup>29)</sup>고 보았다.

이처럼 백장은 선원청규를 중국의 현실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선원생활에서 필요한 승직설치와 법사의궤 그리고 행위규범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했지만, 부처님이 제정한 율의 근본정신에는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하였다. 이는 선원청규가 계율에 있어 중요한 보충작용을 하는 일종의 보조성의 선종승단제도로 볼 수 있다. 최법혜도 “청규는 율장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청규의 내용은 『사분율』의 바라제목차인 止持戒와 건도부인 作持戒를 의미한다.”<sup>30)</sup>는 관점에서 율과 청규의 관계를 상호 계승적 측면으로 보았다. 또한 정성본은 “백장청규는 선종 교단의 새로운 생활율장”<sup>31)</sup>이라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율과 청규와의 관계는 상호 계승적 관계로 볼 수 있다. 백장은 청규를 제정함에 있어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든 규범이 아니라 부처님이 제정하신 율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합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면 왜 부처님 당시 제정된 율과 중국 선

29) 黃奎, 「禪宗清規: 中國佛敎의 制度倫理」『불교계단의 성립과 전개』(제4회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 2007), 83쪽.

30) 최법혜, 「선종청규에 대한 총설」『승가교육』제5집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4), 160쪽.

31) 정성본, 前揭書, 792쪽.

불교의 청규가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기는 시대적 상황이 다르고 문화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제도 규범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율장에서도 율 조항에 명시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용하도록 한 ‘隨方毘尼’가 있다. 이는 지역과 관습에 따라 제정된 佛制라 할지라도 開許를 한 것으로<sup>32)</sup> 『五分律』22권에서는

“비록 그것을 내가 제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방에서 시행하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비록 내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방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sup>33)</sup>

고 했다. 이 점은 선원청규가 불교의 계율을 사상적 연원으로 삼고 있으면서 계율의 비현실적 부분을 문화적 차이와 시대의 변화를 고려하여 선문에 적합한 제도로 제정한 것으로 ‘隨方毘尼’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규는 율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면서 발전되었다. 또한 계율과 청규는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도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儀潤의 『百丈清規證義記』1권에서 청규가 율의 성격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大·小 二乘의 毘尼律藏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止作雙持이다. 이 점은

32) 宗眞, 「律藏과 清規」 『禪院清規 편찬을 위한 학술 세미나』(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7), 61쪽.

33) 『五分律』권22 (『大正藏』22권, 153a), “雖是我所制 而於餘方不以爲清淨者 皆不應 雖非我所制 而於餘方必應行者 皆不得不行”

청규 또한 마찬가지이다. 각 당의 조약과 잘못된 것을 금하는 것과 그 른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은 止持에 속하고, 여러 가지 예의와 참선·염불 등은 作持에 속한다. 이 止持와 作持를 갖추어 계율과 서로 부합시키면, 밖으로는 위의를 덕으로써 사람들을 감회시켜 바른 믿음을 내게 한다. 안으로는 정법을 수호하여 법륜이 항상 굴러가게 할 것이니, 기대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서 자신도 이롭고 다른 이도 이롭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율을 받들어 안으로 보호하고 宗(근본)으로 삼는다. 만약 계율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청규도 행해지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마구니의 무리이며 스스로 불법을 파괴할 것이다.<sup>34)</sup>

비니율장의 기능이 止作雙持에 있듯이 청규도 율장의 경분별인 止持戒와 건도부인 作持戒를 근거로 구성되었다. 宋代에 편찬된 『선원청규』에서도 ‘受戒’와 ‘護戒’를 강조하면서 소임의 역할과 마음가짐, 선원의 일상 의식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가의 의식주에 대한 규정도 율장의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게 제정되었다. 이런 점에서 儀潤은 “율을 받들어 근본으로 삼고 계율이 지켜지지 않으면 청규도 지켜질 수 없다”고 했다. 이 점은 백장 자신도 계율의 근본정신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 입장에서 선종의 규범인 청규를 제정했던 것이다.

34) 『百丈清規證義記』권1, (『卍續藏經』111권, 591c-592a), “大小二乘 毘尼律藏 一言以蔽之曰 止作雙持 茲清規亦然 各堂條約禁過防非等 止持所攝也 種種禮儀參禪念佛等 作持所攝也 具此止作 與律相扶 外以儀德感人 而生正信 內則守護 正法常轉法輪 不期然而然 自利利人矣 此所謂扶律內護爲宗也 如其戒律不持 清規不行 卽是魔黨 自破佛法”



## 2. 율과 청규의 독립적<sup>35)</sup> 관계

인도문화와 역사 그리고 승가의 특수성 속에서 제정된 율과 중국 문화의 바탕위에 자리 잡은 선불교의 수행과 사상을 바탕으로 제정된 청규와의 관계는 분명히 서로 각기 다른 면을 갖고 있다. 이것은 율이 제정된 시대성과 역사적 문화성이 선종 교단의 청규가 제정된 당시의 것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향해는 “율과 청규의 관계를 연속과 단절의 입장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제정된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의도하는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특성과 역할에 있어서 서로 독립적인 제도이면서”<sup>36)</sup> “계율은 교단의 유지 보전을 위한 비구들의 개인 행위에 관한 규율이 최우선적인 문제였지만, 청규는 주지가 어떻게 법을 설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법의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았다.”<sup>37)</sup> 그러면서 “청규는 선종총림의 일상행사의 의식집이다.”<sup>38)</sup>라는 견해를 밝혔다.<sup>39)</sup>

부처님 재세시 제정된 율은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적 형태로 행해졌지만 특히 개인행위에 관한 규정이 강조되었다. 반면 청규는 선종교단의 선자들의 일상생활과 수행생활과 관련

---

35) 본 논고에서 율과 청규의 관계정립에 있어 독립적이라고 쓰는 표현은 어느 한 쪽이 예측되어진 상태에서 독립이 아니라, 서로 각기 다른 독자적 형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36) 향해, 「청규는 제2의 율장인가」『불교평론』2007년 가을 제9권 제3호, 190쪽.

37) 향해, 上揭書, 191쪽.

38) 향해, 上揭書, 187쪽.

39) 향해는 上揭書 192 쪽에서 청규는 대·소승의 계율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중국 왕실의 예법과 형식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3쪽에서는 청규는 계율의 영향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속례의 영향에 의해 제정된 제도라고 하였다.

된 의례적 형태를 중시하면서 수행가풍을 세우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율장과 달리 청규는 선종 교단의 독립적 규범을 갖추면서 선문의 현실에 맞도록 제정되었다.

그러나 율과 청규가 제정된 시대성·풍토·문화·사회적 관습 등의 차이로 서로 다른 독립적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율장의 ‘掘地戒’의 조항을 청규에서는 ‘普請法’을 제정함으로써 초기교단에서는 수행자가 땅을 파는 행위 자체를 금했으나, 선종교단에서는 선자들이 직접 생산 활동에 적극 참여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선종교단에서는 一山の 주지가 단순히 사원을 관리 운영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법을 설하는 위치에 두어 기존의 사원직제의 모습도 변화시켰다. 그리고 선원의 가람구조에 있어서도 불교의례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佛殿보다는 법을 설하는 法堂을 세움으로써<sup>40)</sup> 선문의 독립성을 갖고자 했다.

율장 건도부의 형태가 청규의 내용 속에 규정된 규범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청규문헌 자체만 보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北宋代에 저술된 종색의 『선원청규』와 元대의 『칙수백장청규』의 내용도 의례절차에 따른 의식이 매우 정례화 되어<sup>41)</sup> 청규의 성격도 호법적 성격에서 호국적 형태로 변화 발전되었다. 뿐만 아니라, 율과 청규에 나타난 식생활 문화에서도 변화의 모습이 뚜렷이 구별되어 나타났다. 율장에 보이는 당시 승가의 식생활 형태는 걸식과 請食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중국 선종사원에

40) 「古清規序」『勅修百丈清規』권8, (『大正藏』48, 1158a), “不立佛殿 唯樹法堂者”

41) 『禪苑清規』에는 주지설법에 관한 행례 수행생활에 따른 예법의식, 다례의식, 결제와 해제 절차, 장례 예법 등의 행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칙수백장청규』에 이르러서는 祈請·祈雨·祈雪·遭蝗(해충의 피해를 물리치는 행례)·日蝕·月蝕 등의 행례가 도입되었다.

서는 공양의례 따른 엄격한 절차 속에 발우공양이 행해졌다. 수행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에 있어서도 율장은 다양하게 수용되었다. 육류나 어류 등에 있어서는 수행자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규정하였다. 부처님 당시는 세 가지 청정한 고기인 三淨肉에 대해서는 육식수용을 허가하였다. 즉 자기를 위해 죽이는 것을 직접 보지 않는 고기(不見)와 남으로부터 그런 사실을 전해 듣지 않는 것(不聞)과 자신을 위해 도살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不疑) 것은 공양이 가능했다.<sup>42)</sup>

반면 중국선종의 청규에서는 수행자의 음식의 종류에 있어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면서, 특히 육식수용은 매우 엄격히 금지하였다. 『禪苑清規』 1권, 「護戒」항에는 不應食과 非時食에 대한 조항으로 不應食은 음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종류에 대한 것으로 蔥(파)·韭(부추)·薤(큰 부추)·蒜(큰 마늘)·圓蓂(작은 마늘) 등은 五辛이라 하여 금지하였다.<sup>43)</sup> 이것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없지만, 음식의 냄새와 성질이 수행의 입장에서 볼 때 수행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酒·肉·肉·兔·乳餅<sup>44)</sup>·鱓(곰뽕이) 등의 죽과 猪와 羊의 비개를 사용하는 것도 不應食이라 하여 엄격히 금지하였다.

청규에서는 魚·肉에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肉類를 먹는 것은 수행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율장에서는 순수

42) 신공, 「율장과 청규에서의 육식과 채식의 문제」 『보조사상』 28집 (보조사상연구원: 2007), 20쪽.

43) 『佛祖統紀』 권33 (『大正藏』 49, 323a), “此方言五辛 當云葱韭薤大蒜小蒜”

44) 乳餅은 牛酪의 종류로 우유를 끓여 醋(초산)을 넣어 豆腐의 모양으로 굳힌 형태다.

한 공양물일 때, 몸이 병들어 약으로 쓰여질 때는 三淨肉인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의심하지 않는 육식’은 허용되었는데, 중국 선종은 이러한 부분을 엄격히 금하였다.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플 경우에도 오히려 身命을 버릴지언정 酒이나 肉食 그리고 속세의 맛에 끌려 계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율과 청규에서 보이는 독립적 부분은 승가생활의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수행의 모습에서 서로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율과 청규가 담고 있는 근본정신이 다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율장이 제정되어진 연유가 부처님 당시 교단의 규범을 세워 여법한 수행생활과 정법이 오래도록 머물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점은 청규도 마찬가지이다. 백장이 청규를 제정하고자 했던 이유도 선문의 독립된 수행체계를 바탕으로 원활한 수행가풍을 선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율장과 청규가 제정된 시대의 변화와 풍토 그리고 문화성 사회성들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각기 독립적 관계에 있는 것이지, 율과 청규를 제정한 근본정신은 다르지 않다고 본다.

#### IV. 끝맺는 말

지금까지 율과 청규와의 관계를 계승과 독립적 관계에서 살펴보았다. 부처님 당시 제정된 율은 교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적 성격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원동력이었다. 한 번 제정된 율장의 전문은 기본적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특수한 상황일 경우, 예를 들면 문화적 상황이나 역사적 변천 그리고 환경적 변화에

따라 율장의 조항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開許의 성격을 가진 ‘隨方毘尼’가 있어 예외의 조항을 따로 두었다. 중국선문의 청규가 선종율장의 성격으로 본다면 ‘隨方毘尼’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문화와 사상을 바탕으로 새롭게 형성된 선불교는 선문의 발전을 새롭게 형성해가면서 현실적 측면에서 선종교단의 독립성을 갖기 위해 청규가 제정되었다. 唐代의 백장회해로부터 제정된 청규는 宋代와 元代를 거치면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 발전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선문의 형성과 더불어 청규가 도입되어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근·현대의 내규나 규약 그리고 각 선문의 청규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청규가 제정되었다.

한국불교는 『사분율』을 중심으로 수계득도의 의례가 이루어지고, 수행과 일상생활은 청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현실적 중단 문제는 중헌 종법이라는 삼중구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운데 율과 청규는 시대의 흐름과 문화적 차이에 따라 변화 발전되는 과정에 있어 관계정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율과 청규와의 관계를 계승과 독립적 관계로 나누어 보았다. 율과 청규를 계승적 관계로 보는 경우는 청규가 율의 정신과 기능을 계승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부처님 당시 제정된 율의 정신이 중국 당대의 백장이 제정한 청규의 규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율은 불교교단을 유지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고 청규는 중국선문에 맞는 제도 규정을 통해 독립교단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 특히 청규의 규범 중에는 계율의 受持와 護戒의 조항과 율의 조항이 보이는 등 율의 정신이 청규의 규범에 내재되어 있

기 때문에 율과 청규는 상호 계승적 관계로 보았다.

반면, 율과 청규의 독립적 관계는 규범이 제정된 시대성과 역사성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따라 각각 현실적 측면에 맞도록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승가생활의 의식주에서부터 의례절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에서 서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서 율과 청규에 담겨 있는 근본정신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현실적 측면에서 제도를 설정하는 과정에 문화와 기후 그리고 풍토 등의 영향에 따라 서로 각기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율과 청규와의 관계 설정을 하는 데 있어 청규가 율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보는 점과 청규와 율은 각각 다른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그럼 현재 한국불교의 현실적 입장에서 청규와 율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관계정립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계율과 청규 그리고 중현 중법의 관계에서 이 세 가지의 제정 동기의 의의를 바탕으로 관계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은 출가 수행의 목적과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교단의 발전과 유지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제정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불교교단이 현재 까지 전해져 내려 올 수 있었던 것은 교법과 율이 있었기 때문이며, 선종교단도 청규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의 사상과 수행이 전해질 수 있었다. 반면 중현 중법은 현재 종단을 운영하는 지침이다. 이런 점에서 율과 청규 그리고 중현 중법에 나타난 규정과 조문만을 가지고 관계정립을 구분한다는 것은 문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은 교단을 유지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보아야 하고, 청규는 선종교단의 수행생활의 입장에서 중

헌 종법은 종단의 운영적 측면에서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현재 한국불교는 율과 청규와의 분명한 관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승가풍토에 있어 여러 가지 혼돈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율과 청규의 관계정립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불교에 있어 출가는 『사분율』을 바탕으로 護戒할 것을 다짐하지만, 이는 현실적 상황에서 맞지 않는 규정이 너무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면서 수행생활에 있어서는 율보다는 청규를 더욱 엄격히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승가풍토이다. 또한 현실적 교단 문제에 대해서는 종헌 종법을 바탕으로 징계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등 현실화 되지 못한 규제의 범위 속에 교단이 운영되다 보니 불합리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율과 청규 그리고 종헌 종법과의 관계를 단순히 계승과 독립의 관계가 아닌 명확한 상 하위법의 관계 정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 생각된다. 본 논고에서는 율과 청규의 관계만을 다루는 한정적인 입장에서 종헌 종법과의 관계는 다음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다만 필자의 입장은 율과 청규의 관계는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 발생한 규범이지만 계승과 독립적 관계를 모두 갖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율과 청규의 공통점은 화합승가교단을 만들고 선원생활에 적합하면서 원만한 수행생활을 위해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과 청규의 관계에 있어 청규가 율을 계승했다고만 보거나 율과 청규는 서로 다른 입장으로만 보는 견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규범이나 규제는 그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조계종 선원청규도 이 범위의 틀 속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 당시 제정된 계율의 정신이 배제되어

서도 안 되고 현실생활에 맞지 않는 선원생활의 제도 규범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지금의 조계종 현실상황과 수행 문제를 근거로 율의 정신에 입각한 청규가 제정되어질 때 종단의 종풍을 진작하는 새로운 규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청규(淸規, rules of discipline; Chunggyu),

종헌 종법(宗憲宗法, Jonghun Jongbup), 선불교(禪佛敎, Dhyāna Buddhism),

종풍(宗風, The customs; traditions of a sect),

율(律, vinaya: rules of the Buddhist order), 조계종(曹溪宗, Jogye order),

사분율(四分律, The Vinaya in Four Parts), 선원(禪院, a meditation monastery),

율장(律藏, Vinaya Pitaka: the collection of rules),

선원청규(禪院淸規, the pure rules of Seon temple)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ules of the Buddhist order and Chunggyu

Her, Hoon(Ven. Sin-gong)

Dongguk University

The Chogye Order, the authentic traditional Korean Buddhist Order, has the problem of how to set up the three kinds of rules within their categories; Vinaya(律, rules of Buddha) which has been passed down since the period of Buddha, Chunggyu(清規, rules of discipline) which have settled down in the image of Zen Buddhism, and Jonghun Jongbup(宗憲宗法, the prim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Order) which was established for the practical administration of the Order.

It is focused on the matter whether to overcome the difference of the both historical and cultural traits between vinaya established in India and Chunggyu organized in

China.

In the current process of Buddhist Initiation Rituals 『The Vinaya in Four Parts』(四分律) is regard as the essence. And in the various types of practicing places, the process is accomplished according to the basis of Cheonggyu, the rule which is made on special purpose. In addition, all about the operation and the bylaw of a temple are based on Jonghun Jongbup.

In the situation that Vinaya, Chunggyu and Jonghun Jongbup make the threefolded structure, how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among them is a very important matter. We can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Vinaya and Chunggyu as independent

On the other hand, as Vinaya and Chunggyu are regarded as having independent relationships, different cultures and historic traits, they are established to meet the realistic point of view.

In this way, in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inaya and Chunggyu two different aspects are included, one is the viewpoint that Chunggyu followed the spirit of Vinaya and the other is that they have independent and legislative nature.

This is a different problem in that the relationships of the three should be established not by the simple succession or

independence but by the hierarchically superior and inferior.

However, as far as I am concerned, although Vinaya and Chunggyu have been developed in the different situation of time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y have the nature of both independent and legislative. Above all, the common point of the two is that they were practiced to make the harmonious Order and to lead a suitable and smooth life in Zen Center. Judging from these points, the opinions that Chunggyu succeeds Vinaya or Vinaya and Chunggyu should be viewed from the different point of view are not fai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inaya and Chunggyu . All rules and regulations inevitably made based on the situation of the time.

The on going Chunggyu should also be established within the category of these frame. The spirit of the rules set up in those days of Buddha should not be excluded nor should they be the unrealistic system and rules for the life in Zen Center.

When a new Chunggyu which is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of Chogye Order and the spirit of the Vinaya, a new standard making the tradition of the religious Order will be made.

